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

Welfare of Video Production Professionals in Accordance with Enforcement of Artist Welfare Act

김종국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Jong-Guk Kim(2010kjg@gmail.com)

요약

「예술인 복지법」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문화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은 새로 출범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연예 분야에 명시된 영상제작 종사자의 대부분은 관련 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법적 위상에 있어 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연구는 영상제작 종사자의 열악한 복지문제를 제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 법의 예술인 정의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법적 위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영상제작 종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의 인지 여부, 당사자와의 관계, 쟁점에 관한 의견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이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를 폭 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예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예술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중심어 : | 예술인 복지법 | 연예(演藝) | 방송영상제작 종사자 | 사회보장보험 | 예술인복지재단 |

Abstract

"Artist Welfare Act" from the November 18, 2012 is being implemented. However, in the field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 the artists are the subject of a variety of policies by the newly launched Korean Artist Welfare Foundation Artists, but most of video production professionals are not aware of law enforcement and their legal status is ambiguous. This research raised the issue of poor video production workers welfare, and to seek the ways took a look at the key information of "Artist Welfare Act" and social issues. To this end, by in-depth interviews with video workers I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such as comments about the issues. Accordingly, a wide range of video production to reflect the welfare of workers in the "Artist Welfare Act" of the amendment shall be made. Above all, this should be reflected in measures to raise funds for artist welfare.

■ keyword : | Artist Welfare Act | Entertainment | Video Production Professionals | Social Security Insurance | Artist Welfare Foundation |

I. 서론

‘대왕의 꿈’ 무술 엑스트라 첫 산재 인정-지난 4일 기준으

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107명이다. 유형별로는 창작 5명, 실연 102명으로 실연이 대부분이다. 분야별로는 연예 방 송 부문이 57명으로 가장 많이 가입했다[1].

접수일자 : 2013년 10월 28일

수정일자 : 2014년 01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1월 15일

교신저자 : 김종국, e-mail : 2010kjg@gmail.com

예술인도 모르는 예술인 복지법-자체 시행령 내용 부실에 지원 대상 기준도 모호, 산재지원 등 지자체 논의 없어 대다수 내용 몰라[2].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1조 목적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3]”이다. 근본적으로 문학·미술·사진·건축·국악·무용·연극·연예·영화 분야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예술활동을 근로활동으로 인정하기 위해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통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2013년 4월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절반 이상이 연예·방송 분야 종사자이다. 그만큼 연출, 연기, 기술 등 방송을 비롯한 영상제작 종사자의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이다. 2012년 신현구는 방송영상제작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임금근로, 프리랜서, 자영주 등의 고용 유형을 포함한 영상제작 인력들이 직면한 장시간 근로,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사회보험미가입, 퇴직 및 실업에 따른 생계 곤란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4].

법률과 동시에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해당자를 명시하고 있다. 연예(演藝) 분야에서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음악·코미디·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할 실적이 있는 자,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드라마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5]”가 영상제작 종사자에 해당한다. 「예술인 복지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따라 영상제작

에 종사하는 자는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으며, 고용 및 복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의 문화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은 새로 출범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연예 분야에 명시된 영상제작 종사자 대부분은 관련 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법적 위상에 있어 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연구는 영상제작 종사자의 열악한 복지문제를 제기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시행 중인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 법의 예술인 정의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법적 위상을 짚어본다. 구체적으로는 영상제작 종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의 인지 여부, 당사자와의 관계, 쟁점에 관한 의견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를 반영한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해 본다.

II.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과정 및 쟁점

영화 분야에서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영화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영화계 노사정 협약이 이뤄졌다[6].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영화산업 종사자의 기초사회보장제도 확대 및 영화산업 표준 근로기준 적용이다. 투자와 제작 진행 시 4대 보험 적용과 같은 기초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모든 직무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은 영화산업노사단체협약으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협약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는 강제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복지 증진과 함께 의무를 강제한 것이다. 지난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과정과 시행에서 문화산업 종사자의 고용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영화계의 성과이다.

1984년에 발족한 한국영화복지재단이 취약계층 및 원로영화인을 대상으로 공로금, 생계비, 위로금, 장학금 명목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이 발의되고 제정되기 수년 전부터 영화계는 영화인 공제회 설

립 및 운영 방안, 실업부조제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문학, 연극, 미술, 무용 등의 분야에서 무직자로 취급되던 문화예술인의 법적 지위 및 복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고, 지난 정부 말기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제정되기까지 순탄한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다. 문화산업 종사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목적은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보장과 일정 수준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생계 방안에 마련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술인공제회를 구상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예술인의 인식과 복지수요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7]. 방송산업 분야에서는 방송연예 종사자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뤄졌다[8]. 방송산업 종사자들의 심화된 양극화, 노예계약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대두에 따른 근로 환경 및 복지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에는 법에 명시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영상제작 종사자의 근로실태와 프리랜서의 사용자 종속성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9].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결정의 사회정치적 흐름과 예술 현장의 제안과 같은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피는 연구가 특징적이다[10].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둘러싼 쟁점 사항으로는 예술인 정의 및 예술활동 증명 기준에 관한 조항, 표준계약서 보급 및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보상에 관한 조항, 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에 관한 조항 등이 있다[11]. 이들 쟁점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 예술인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적용될 지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거의 없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된 예술인들을 위한 실제적인 복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술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영상제작 종사자가 어느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예술인의 정의는 그 규정의 성격에 따라 협의적이거나 광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제작 종사자는 예술인의 정의에 포함되기도 배제되기도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III. 예술인 정의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법적 기준

「예술인 복지법」 2조에서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12]”로 정의한다.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이다. 예술활동 분야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동 법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13]”으로 한정하고 있다. 창작, 실연, 기술지원의 분야로 나뉘어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로 명시함으로써, 입안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예술인의 범위를 세부화한 조항이다. 시나리오·소설 등의 창작분야, 영화·방송·연극·무용 등의 연기를 의미하는 실연분야, 제작활동의 스태프들로 구성된 기술지원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연예 (演藝)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음악·코미디·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대중음악 공연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1장 이상의 대중음악 음반을 낸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드라마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방송·연예산업은 엔터테인먼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적으로 살펴보는 관점이다. 방송·연예산업은 엔터테인먼트적 기능을 가진 콘텐츠, 즉 드라마, 음악, 오락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산업이

다[14]. 방송·연예 산업 종사자는 프로그램제작업을 중심으로 제작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의미한다. 이들을 방송·연예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인력 중심과 기술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기자나 방송작가는 자신의 예술적 감수성을 활용하여 제작에 참여하며, 조명기사나 편집기사는 조명기와 편집기의 운영능력, 즉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전문기구이다. 유네스코 헌장 제1조 목적은 “국제연합헌장이 세계의 제 인민에 대하여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 없이 확인하고 있는 정의, 법의 지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제 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이다[15]”. 1980년 10월 27일 제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규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정의에서, 예술가란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예술인 정의에 따른 적용범위로는, 모든 예술가에게 적용되며 그러한 예술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술의 분야나 형식에는 전혀 구애되지 않는다. 특히 여기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의 적용을 받는 연주가와 번역가들을 비롯하여 「세계저작권협약」과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창조적인 예술가와 저자들이 포함된다.

IV. 분석대상 및 방법

「예술인 복지법」은 시행과 동시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로부터 개정을 요구받고 있다. 개정 이유는 예술

인들을 위한 복지가 제도로서의 형식만 있을 뿐, 내용에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의 젊은 예술인들부터 원로 예술인들에 이르기까지 복지 수혜가 이뤄지려면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복지재단의 운영비 정도만 할당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을 둘러싼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동 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과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쟁점 분석과 방안은 19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비교분석한다. 동 법의 전제로 유네스코의 국제규범인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명시된 예술가의 정의 및 지위, 사회보장제도, 문화정책 및 수행 기구 등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예술인 복지법」의 문제를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 예술인인 영상제작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2012년 1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개별면접을 했고,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은 직군, 소속, 경력, 직위, 성별 등에 있어 다양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했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스태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감독, 촬영감독, 연기자, 프로듀서, 구성작가, 무술연기자 등으로 구성된다. 질문 내용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관한 인지여부와 자신과의 관계, 국가로부터의 수혜 가능성, 동법의 제정 및 시행 이유, 예술인의 정의 및 지위에 관한 문제,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예술인복지재단 등이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복지법」과 관련한 자유로운 답변을 요구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인적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인터뷰 대상자

이름/이니셜	나이/성별/학력	현직/경력
A	35/남/대학원졸	프리랜서 촬영감독/방송,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촬영팀
B	59/남/고졸	방송무술연기자/장군의이들, 화려한휴가, 야인시대 등 출연
C	33/여/대학원졸	배우/드라마, 영화 출연
D	42/남/대졸	프로듀서/드라마, 영화, 광고

E	37/남/대졸	영상미술/광고 및 홍보영상, 뮤직비디오제작, 영화, 애니메이션미술
F	31/여/대졸	구성작가/방송작가
G	42/남/대졸	프로듀서/오인브라더스, 미녀는 괴로워, 경의선 등 프로듀서
H	35/남/대학원수료	조감독/연출부
I	24/남/대학휴학	연기 전공

분석방법에서 기존의 수용자 이론을 이론적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을 분석대상으로 했고, 여기에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의 동 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응답 분석에 수용자 연구의 접근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술인 복지법」 그 자체에 대한 반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동 법에 관한 논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V. 분석

1. 영상제작 종사자의 법적 지위

유네스코의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지위라는 용어는 한 사회에서 예술가에게 요청되는 역할에 따르는 중요성을 기초로 위에서 정의된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존중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제 권리를 포함하여 특히 예술가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소득과 사회보장과 관계되는 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동 권고는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회원국은 기술혁신 연구 활동을 포함한 예술적 활동을 그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로 간주하여 예술가의 지위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회원국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활동의 완전한 개발에 필요한 존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예술가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경제적 보호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회원국은 예술가들에게 그들의 문화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그들이 공공적인 인정을 받도록 해주어야 하며, 아직 그러한 체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의도

하는 바가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는, 예술가들에게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영예를 부여해 주는 조직체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회원국은 예술가가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와 보호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예술가는 고용, 생활, 작업 조건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입법에 의해 예술가와 비견되는 활동적인 인구 집단에 주어지는 것과 같은 권리들을 향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또한 자영적인 예술가도 상당한 한계가 있기는 하나 소득과 사회보장에 관한 보호를 누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회원국은 현존하는 협약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세계저작권 협약」,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의 적용을 받는 예술가의 제 권리의 국제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아직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원국의 경우, 그러한 조치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분야와 그 범위 및 그들 문서의 효력을 확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회원국은 예술가 노조와 직업적 조직에게는 그들 회원의 이익을 대변, 방어하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그러한 조직체에게 행정 당국에 조언할 기회를 줌으로써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그 보호와 발전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행정 당국이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를 폭 넓게 규정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 사회보장, 노조활동 등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국내의 「예술인 복지법」으로 취해진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영상제작 현장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스태프 예술인들은 유네스코의 권고 뿐 아니라, 국내의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이다. 다음은 「예술인 복지법」에 관한 인터뷰부를 묻는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이다.

들어봤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각계 예술인에 대한 최저 생활고 지원정책 아닌가.(D)

정확하게 어떤 것인 줄은 모르지만, 예술활동 아티스트 등 여러 가지 예술분야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노동자분들에게 노동법이 있듯이 예술인들을 위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I)

내가 처한 상황과 많은 관계가 있다. 4대 보험에 해당되지 않은 계약직 일, 특히 내가 속한 영화산업에서 오는 분배의 모순과 불합리 등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가는 올라도 스태프 관련 인건비는 아직도 그대로인 실정이 현실이다.(D)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예술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훗날 희망하는 일이 예술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나중에 예술활동이나 여러 활동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을 경우 예술인 복지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I)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인 처우에 대한 법이라고 생각한다.(H)

창작 활동이나 창작에 관련된 일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서 벌어지는 쟁점이라 생각한다.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으로 예술인과 비예술인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발상이라 생각한다. 아니 오히려 예술인의 정의를 내리라는 질문부터가 모순이라 생각한다. 현대는 다양한 매체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모든 이가 창작 또는 예술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이들이 쉽고, 자유로이 창작 활동을 할 것이다. 제도에서 언급된 분류로 예술인 복지를 시행한다면 앞으로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복지는 누구에게 국한되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 생각한다. 오히려 예술인들이, 아니 전국민이 자유로운 창작 혹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국가가 마련해 주고, 복지는 전 국민에게 공평히 시행된다면, 예술인, 비예술인으로 나누는 기이한 시각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대의 변화를 제도나 법률로 묶으려 하는 것이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A)

최저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현실, 부당한 대우, 4대 보험 미가입 등 영상제작 스태프들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응답자들은 「예술인 복지법」을 자신들의 처우를 정부가 보호해 주는 제도로 이해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제정과 강력한 시행으로 자신들의 열악하고 부당한 현실에 변화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현행 「예술인 복

지법」은 규정에 있어 강제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위의 응답에서처럼, 전국민의 예술활동과 문화향유가 보편화되어야 하는 문화복지 시대에 예술인과 비예술인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제정되고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은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박창식 의원 대표발의안은 예술인의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예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예술인의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예술계의 경우 고용·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존재하며 서면 계약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예술인 근로실태의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예술인의 고용, 임금,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길정우 의원 대표발의안은 「예술인 복지법」이 대중문화예술영역에서 예술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 및 기술적·보조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들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등 부당한 행위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예술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영역에서 예술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 등의 계약 및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 등이 불공정한 계약조건 등 부당한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예술인 및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의 업무에 기술적·보조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자유로운 예술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예술인의 노동조합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표준계약서의 보급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보급된 계약 표준양식에 준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길정우 의원 대표발의안

발의연월일 : 2012. 8. 21
<신설>제4조의2(시책 및 실태조사) ① 국가는 예술인 및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의 업무에 기술적·보조적 용역을 제공하는 재(이하 "예술인등"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자유로운 예술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제5조의2(대중문화 예술에 관한 특칙)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 영역(이하 "대중문화예술영역"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표준계약서를 제정·고시할 수 있다. <신설>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영상제작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길정우 의원이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의 기술적·보조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모호한 분야에 있던 대중문화예술영역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과태료 규정 등 강제 조항의 신설로 「예술인 복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과 규칙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유네스코가 명시한 예술가의 지위를 위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2.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6장은 예술가의 고용, 작업,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으로 예술가의 직업 및 노동조합 조직을 명시한다. “예술가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예술가들의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켜야한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의 「요급부담 고용기구 협약」을 인용하면서, 고용정책이나 공공 고용기관의 틀 안에서 예술가의 취업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제도의 설립 가능성을 제시한다.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의해 정의된 노동 및 고용 조건에 관한 법적 보호를 예술가들에게도 확대 적용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6장 5조는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각국의 문화적 환경 내에서 여타 피고용자 집단과 자연단체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것과 같은 사회적 보호를 피고용 예술가와 자영 예술가들에게도 제공하도록 노력하기를 요망한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부양가족에게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대비해

야 한다. 회원국이 적용하거나 향상, 혹은 보충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예술가 고용의 간헐적인 성격과 예술가들 간의 격심한 소득 격차가 특히 눈에 띄는 예술활동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술가가 그의 작품을 창조하고 출간하고 보급하는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장 기금의 특별한 수단들의 채택 예컨대 공공당국 혹은, 예술가의 용역이나 작품을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민간 사업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원에 의뢰하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요망된다.” 또한 4조에서는 노동조합 조직을 장려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고용 및 노동조건의 보호를 위한 직업단체 및 노동조합 조직의 역할을 인정하여, 국제노동협약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 단체 조직과 단체협약의 권리에 관계되는 기준들을 준수하고, 그 협약의 토대가 되는 그러한 기준과 일반원리가 예술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부지원의 인지 여부,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는 법률 및 제도를 살펴보지 않아 모르겠다. 어떠한 기준으로 다수의 예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고의 작가의 사망을 미루어 짐작컨대, 최저 생계비 보장이나 제작사, 투자사의 불공정한 계약 강요 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A)

사실 정확한 복지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만일 혜택을 받는다면 최소 4대 보험 관련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D)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된다면 예술분야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인정되고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을 것 같다.(I)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혜택만을 주는 것은 예술인들을 산업활동 종사자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술인들 가운데는 산업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희박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도 상당히 많다. 이들은 예전과 똑같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4대 보험이 예술인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적용된다면 굳이 예술인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해 본다. 예술인들을 위한 법률이나 제도가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복지가 우선된다면 자연스럽게 예술인들의 권익 역시 보장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A)

산재보험만인 줄도 몰랐네. 당연히 평범한 직장인으로 인정 해주길 바란다.(H)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들로 하여금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입률이 낮은 편이며, 가입 자격의 기준을 정하는 복지재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설정이다. 예산 문제로 일반 국민이나 예술인들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 또한 거의 없다. 위의 응답처럼, 국민을 위한 문화복지가 선행된다면 예술인들만을 위한 법률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표는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표 4.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

발의연월일 : 2013. 1. 14.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③ 예술인은 직업적·사회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결사체를 조직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표준양식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예술가의 고용, 직업, 노동조합 등을 자세히 상술하고 있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 비해 「예술인 복지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제한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최민희 의원은 예술인을 근로자에 준하여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예술인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할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술인의 예술 활동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보수를 목적으로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준하여 보호되고,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근로환경 보장과 고용보험 가입 및 보수채권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 4]의 최민희 의원은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명시된 것과 같은 정도의 예술인들의 노동조

합 조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예술인은 직업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결사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 조직에만 한정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권고안은 노동조합 조직을 비롯해 고용정책, 노동과 고용의 조건,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기금, 부양가족을 위한 사회적 보호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규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당사자간의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강제하지만, 유네스코의 권고가 정하고 있는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에 미치지 못하는 개정안이다.

3. 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7장에서 문화정책과 참여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예술가의 견해와 그들을 대표하는 직업단체 및 노동조합 조직의 견해, 그리고 일반 국민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회원국의 문화정책의 형성과 실행을 세심하게 고려한 유네스코의 「일반대중의 문화생활에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의 정신에 입각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예술가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들이 정책 결정과정 등의 이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조치들,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의 문화와 예술의 창달에 관계되는 조치들, 셋째, 국제문화협력의 장려에 관계되는 조치들이다. 예술가의 직업훈련을 위한 제반 사항, 민족과 전통예술가들의 여타 활동을 포함한 문화발전, 작품과 예술가들의 교류 등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향후 정부의 역할 등의 질문에 관한 것이다.

현재 국가에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 관련 기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주변의 어떠한 예술인들도 그 기관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혹은 그 기관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는지 모른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소위 예술인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곳으로서 존재하면 된다고 본다. 오히려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무수한

기관들이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존재하는 기관들이 각 부분의 예술인들을 충실히 지원하고, 창작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예술인들을 위한 더 나은 복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예술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잘하는 예술 분야로 표현해 낼 때 행복함을 느낀다. 예술인들이 맘껏 표현하고 창작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 복지가 아닐까? 지금은 자신의 일을 하는 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A)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예산을 책정해도 결국 원활한 혜택을 주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이다. 복지재단에 누가 그들과 소통을 해서 시행을 하느냐. 기존 정부의 인력 즉 예술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의 구성은 위험하다. 최소한 재단의 이사와 임원은 각계 현장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D)

예술분야에 있어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는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I)

복지? 기본적 삶의 영유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H)

보편적 복지, 복지 정의 실현해야 한다. 예술인 복지 더욱 절실하다. 세상을 따뜻하게 때론 사회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인을 양성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 예술인이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D)

유네스코 권고의 문화정책과 참여에 관한 조항들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의 설립, 임원 구성, 사업내용 등에 관한 규정만 있고 운영을 위한 재원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다. 예술인과 예술활동을 위한 정책 및 참여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예술인 복지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박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원의 조성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있다.

표 5. 박창식 의원 대표발의안

발의연월일 : 2012. 8. 14.
<신설>제10조의2(재원의 조성) ①재단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창식 의원안은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재원으로 규정하여 예술인 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신설 조항을 제시한다.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예술인복지재단 출범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 및 고용창출 지원 등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했다. 개정안은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 근거를 법제화하여 예술인복지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VI. 결론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일을 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받게 해준다면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는 전 국민에게 더 많은 창작의 장을 마련해주고, 그에 대한 끊임없고, 일관된 지원을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A)

이는 현장 예술인의 「예술인 복지법」의 실효성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이며 국가를 향한 방안 제시이다. 정책과 법제도에 앞서 예술인에게 필요한 것은 창작활동의 장이며 정당한 대우이다.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6장 1조 다항은 예술기금 설립에 관한 권고를 명시하고 있다. “회원국은 개발의 관점 안에서 예술적 활동을 촉진하고 예술가를 위한 유급 작업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예술활동의 결실에 대한 공적 또는 사적 수요를 자극해야 한다. 특히 이것은 예술단체 및 개별적 예술가들의 위원회, 혹은 지방적, 지역적, 전국적 차원에서의 예술 활동 기구를 통한 보조금이나 예술기금의 설립을 통하여 조장되어야 한다.” 이 같은 유네스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기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 또한 누락한 채

예술인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및 기부금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의의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의 외면을 받는 이유이다. 따라서 개정의 방향은 무엇보다 예술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 도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30일에 공포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보면, 김정우, 박창식, 최민희, 이학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을 규정하고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 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각각의 발의안을 절충한 것에 불과할 뿐, 여전히 실효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예술인의 지위와 관련해서 예술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방송, 영화, 광고 등의 영상제작 종사자들 대부분이 하위의 스태프들로서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이유가 이들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예술인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 인해 오히려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안은 다양한 장르의 영상제작 종사자가 예술인의 정의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동 개정안은 예술인들의 사회보호장치로서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명시해야 한다. 셋째, 동 개정안은 영상제작 종사자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한 재원 및 기금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이현수, “대왕의 꿈 무술 엑스트라 첫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2013.4.8.

[2] 강선영, “예술인도 모르는 예술인 복지법”, 금강일보, 2013.4.10.
 [3] 「예술인 복지법」 제1조 목적.
 [4] 신현구, “방송영상제작분야 인력의 근로실태와 프리랜서의 사용자 종속성”, 노동리뷰, pp.36-51, 2012(7).
 [5]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6] 영화진흥위원회,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 및 영화 근로자의 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 영화진흥위원회, 2013.
 [7] 박영정,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인식 및 복지수요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8.
 [8]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 연예 산업 종사자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6.
 [9] 신현구, “방송영상제작분야 인력의 근로실태와 프리랜서의 사용자 종속성”, 노동리뷰, pp.36-51, 2012(7).
 [10] 최정민, 배관표, 최성락,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 과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43-252, 2013.
 [11] 김종국, “예술인 복지법과 영화인 고용복지”, 영화연구, pp.67-93, 2012.
 [12]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정의.
 [1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14]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 연예 산업 종사자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11, 2006.
 [15] 「유네스코 헌장」 제1조 목적.

저 자 소 개

김 종 국(Jong-Guk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동국대학교 연구 영화학과 (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방송미디어영상전공 교수 <관심분야> : 영상이론 및 제작